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9. 12. 29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12월 10일 이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9년 12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36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제2차(99. 12. 28)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가.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동 조례중 상위법의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른 사항과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시 시장의 승인 얻어야 하는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허가시 이천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던 규제사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1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윤순성)

- 폐기물관리법 제16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등 주민의 불편사항 조항(조례 제9조)을 삭제하려 하는 것이며,
- 동법 제26조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위임 근거 없는 이천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 제12조 제1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부 결(만장일치)

7. 기타사항 : 없 음